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 3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022. 12. 12.(월)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50

발의일자 : 2022. 11. 17.

회부일자 : 2022. 11. 23.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연구식 의원 외 21명

2. 제안 이유

-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련한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발전을 도정의 핵심운영원칙으로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추진상황의 점검,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0조)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2조)
-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4조)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서) : 붙임
- 법제심사(입법정책담당관실) : 붙임
- 규제개혁 심사(법무혁신담당관실)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실) : 부패 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의견(환경정책과) : 붙임
- 입법예고기간 : 2022년 11월 23일 ~ 11월 28일
-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의 지속 및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등 지속가능발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경제·환경·사회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전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이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022.1.4.제정, 2022.7.5.시행)·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본 조례안은 총칙(제1장),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제2장), 지속가능성 평가(제3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등(제4장), 보칙(제5장) 총 5장, 2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제1장 총칙에서 목적(제1조), 정의(제2조), 도지사의 책무(제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¹⁾,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위임된 사항을

1) 총칙규정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해석, 책무, 적용범위, 범위 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법령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의 정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3조**는 도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이행)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 제7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 제8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안 제4조와 제5조**는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도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도록 명시하였고,
-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 기본전략 및 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기본전략수립과 이행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또한 제4조제5항과 제5조제4항에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한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을 둔 것으로 법 제32조제4항2)에 근거하여 의회차원에서의 점검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7조**는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추진상황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가 연계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계획이나 조례의 변경내용에 대한 검토 후 위원회가 도지사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은 30일로, 도지사가 위원회로부터 받은 검토 결과의 반영내용을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기한의 경우,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제5항3)을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③ 생략.

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의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지표에 따라 2년마다 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안 제6조의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와 연계하여 보고서를 작성토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제10조제3항은 법 제32조제5항4)에 근거하여 이를 국가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을 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 제13조(위원의 임기)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 제1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 제17조(회의의 운영) / 제18조(운영위원회) / 제19조(의견청취) /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 제21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

-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기능(안 제11조), 구성(안 제12조), 위원 임기(안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4조), 위원의 위촉해제(안 제1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안 제16조), 회의의 운영(안 제17조), 운영위원회(안 제18조), 의견청취(안 제19조)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규정애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20조**는 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 계획 등의 원활한 업무 협조 및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 시행령 제20조5)의 규정을 참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 제21조**는 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효율적 이행과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3조의2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규정을 본 조례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방의제 21 정신과 원칙6)에 대한 설명과 지원주체를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장 보칙]

제22조(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 제23조(교육·홍보 등) / 제24조(국내외 협력)

- **안 제22조**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3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군·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6) 1992년에 개최된 리우환경회의에서는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이 개별국가의 노력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고 보고, 개별국가 차원의 '의제 21'(Agenda 21)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을 수립하도록 권고 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2015년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등을 채택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의제21은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음. 또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 안 제23조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과 홍보,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의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려는 조치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 제24조는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참여와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서 기존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효력 유지를 위한 경과규정과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3조의2 조항을 본 조례 안 제21조로 규정한 사항에 대한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종합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022.1월 제정),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2. 7월)·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한 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발전을 도정의 핵심운영원칙으로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경북도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기여하려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 또한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있고,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붙임 1.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반현황
2. 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
3. 도내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

□ 일반현황

- 설립 일 : 1996. 9. 9.
 - ※ 명칭변경 : 녹색경북21 →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15.7.20, 5기 출범시)
 - ※ 도청 이전(2019. 2. 12.), (사)경북환경포럼 통합(2019. 4. 5.)
- 지원근거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6조, 道환경기본조례 제23조의 2
- 협 의 회 : 이사회(11명), 감사(2명), 회원(135명)
- 회 장 : 권순태(안동대학교 총장, 1962년생)
 - ※ 임기 : 2년('21. 7. 26. ~ '23. 7. 25.)
- 사 무 처 : 4명(사무처장, 기획국장, 기후환경팀장, 간사)
- 시군협의회 : 23개 시군 중 14개 활동 중
 -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영덕, 성주, 예천, 칠곡, 봉화, 울릉
- 사업내용
 -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장기적·구체적 실천
 - 지자체, 주민, 민간단체, 기업 등과 환경보전 협력사업 추진

□ 연도별 예산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00	300	270	200	200	200	250	180	280	330	280	300
사업비	300	300	270	200	200	120	170	100	100	150	100	100
운영비						80	80	80	180	180	180	200

※ 환경포럼(12백만원), 기후환경네트워크(67백만원) 미포함

붙임 2

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

시도	처장	사무처 직원수						2021년 예산액(백만원)			조례 제정
		계	처장	국장	부장	팀장	간사	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전국	4급 상근	5	1	2			2	440	309	131	×
서울	5급 상근	4	1	1 (6급)	1 (7급)		1 (기간)	80	80	공무원	○
부산	5급 상근	3	1				2	350	200	150 (111)	○
대구	6급 상근	4	1		1			237	119	118 (95)	○
인천	5급 상근	5	1				1	447	194	253 (155)	○
광주	5급 상근	6	1		1		3	1,340	988	352 (333)	○
대전	5급 상근	5	1		1		2	441	289	152 (130)	○
울산	7급 상근	4	1				3	705	575	130 (76)	○
경기	5급 상근	6	1		2		3	920	574	346 (296)	○
강원	6급 상근	3	1		1			220	83	137 (127)	○
충북	5급 상근	7	1	2	1		1	711	564	147 (136)	○
충남	5급 상근	6	1	1			3	454	186	268 (196)	○
전북	5급 상근	7		1	2		3	690	500	190 (183)	○
전남	7급 상근	2		1			1	220	117	103 (82.5)	○
경북	5급 상근	4	1	1			1	280	100	180 (135)	○
경남	5급 상근	3	1				1	280	133	147 (117)	○
제주	5급 상근	5	1				2	489	407	82 (72)	×
세종	5급 상근	5	1	1			1	128	60	68	○

붙임 3

도내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

(단위 : 천원)

시군	추진협의회 명칭	회 장	회원수	구성일자 (재구성)	예산현황
계			2,472		630,500
포항	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준택, 박해자	700	98.3.24	308,000
경주	경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경호	50	06.1.25	63,000
김천	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문수	45	98.402 (15.1.27)	6,500
안동	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병식	400	98.6.26 (15.12..29)	77,000
영주	영주아젠다21추진협의회	서익제	45	05.9.13	9,000
문경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김성호	25	07.7.25	37,000
상주	상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승묵	50	21. 05.14	-
의성	푸른의성21추진협의회	김대진	50	98.11.11	5,000
영덕	영덕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수인	182	06.3.18	26,000
예천	예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장연석	390	00.11.8	15,000
성주	성주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명길	470	21.03.26	30,000
칠곡	녹색성장칠곡21추진협의회	김윤오	19	07.11.13	4,000
봉화	봉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송상욱	40	20.6.24	-
울릉	푸른울릉21협의회	전경중	6	98.3.14 (10.6.8)	50,000

※ 미 활동지역(9) : 구미, 영천, 경산, 군위,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울진

※ 2022. 11월 영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립식 예정

2022. 12월 구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립 준비를 위한 MOU 예정